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4. 6. 21 선고 2024가단102938 판결 [계약금반환 청구의 소]

전 문

원 고 A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4. 5. 10.

판 결 선 고 2024. 6. 21.

주 문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원고는 피고에게 39,6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미술품 전시 및 위탁판매업을 하는 피고와 사이에, 2021. 10. 2.경과 같은 달 9.경 2차례에 걸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미술품 2점(이하 ‘이 사건 각 미술품’이라 한다)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2021. 10. 2.자 매매계약을 ‘이 사건 제1계약’, 2021. 10. 9.자 계약을 ‘이 사건 제2계약’이라 하고, 위 각 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

계약 \ 품명	C, 2015(제1계약)	D, 2018(제2계약)
작가	E	E
매매위탁자 (소장자)	F(2022. 6. 26. 사망)	G
계약체결일	2021. 10. 2.	2021. 10. 9.
매매대금	250,000,000원	120,000,000원
계약금	50,000,000원(계약 당일)	5,000,000원(계약 당일)
2차 계약금	-	7,000,000원(2021. 10. 12.)
중도금	100,000,000원(2021. 10. 28.)	-
잔금	100,000,000원(2021. 11. 15.)	108,000,000(2021. 11. 26.)
주요 내용	2. 작품과 작품보증서는 잔금 결제 이후 "A"(원고)의 지정장소에 운송하여 인수인계하기로 하고, 작품 인수인계증으로 상호 확인하기로 하며, 향후 어떠한 경우라도 재발급은 불가하기로 약정한다. 4. 계약 이후 상호 간 한쪽의 일방적 본 계약의 취소 및 변경 요구와 작품 대금 기일의 불이행이 있을 경우, 상호 계약을 즉시 해지하기로 약정하고, "A"(원고)와 "B"(피고)는 각 상대방에게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기 결제금액(계약금 등) 전액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한다. 5. 계약 당사자는 본 계약 내용 이외의 어떠한 주장을 할 수 없기로 한다.	

계약 \ 품명	C, 2015(제1계약)	D, 2018(제2계약)
작가	E	E
매매위탁자 (소장자)	F(2022. 6. 26. 사망)	G
계약체결일	2021. 10. 2.	2021. 10. 9.
매매대금	250,000,000원	120,000,000원
계약금	50,000,000원(계약 당일)	5,000,000원(계약 당일)
2차 계약금	-	7,000,000원(2021. 10. 12.)
중도금	100,000,000원(2021. 10. 28.)	-
잔금	100,000,000원(2021. 11. 15.)	108,000,000(2021. 11. 26.)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각 계약 일정에 따라 이 사건 제1계약의 계약금 5,000만 원과 이 사건

제1계약의 계약금 합계 1,200만 원(= 1차 500만 원 + 2차 7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이 사건 각 계약의 중도금 내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대금 지급이 지체되던 중 피고는 위탁자들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각 미술품을 위탁자들에게 반환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 5, 8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라 계약금을 지급한 후 사기 피해 등 경제적 곤란을 당하여 잔금을 지급할 수 없었는데, 미술품 거래에는 고객이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지급한 돈에 상당하는 가치의 다른 그림으로 대체하여 교부하거나 지급한 돈을 반환하는 관행이 존재하므로, 피고는 위 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이 사건 각 계약 제5항의 손해배상액의 예정 규정에 따라 원고가 이미 지급한 계약금을 전혀 반환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각 계약의 내용과 경위 등에 비추어 위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부당히 과다하므로, 이를 적정한 금액으로 감액하여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그 적정한 수준을 초과하는 부분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각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계약이 해제되었고, 이에 따른 피고의 손해 등을 감안하면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부당히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미술품 거래 관행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미술품 거래에서는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미술품 판매상은 그 지급한 돈에 상응하는 가치의 다른 미술품을 대체하여 주거나 이미 지급한 계약금을 반환해 주는 관행이

존재하므로, 위 관행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기 지급한 계약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이 사건 각 계약의 내용 및 일반 상거래 관행과도 상충될 뿐만 아니라, 미술품 거래시장에서 위와 같은 관행이 존재한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손해배상액 예정의 감액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각 계약 제5조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피고가 이 사건 각 계약금을 모두 물취하는 것이 부당히 과다한지에 관하여 본다.

1) 을 제11,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수차례 잔금 지급을 독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 사건 각 계약 체결 이후 장기간 중도금 내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 원고의 잔금 지급이 지체되는 점을 이유로 위탁자들이 피고에게 미술품 반환을 요구하자, 피고가 보관하고 있던 이 사건 각 미술품을 모두 위탁자들에게 반환한 사실(이 사건 제1계약의 미술품은 위탁자 F가 사망 전인 2022. 6.경 이전에 직접 회수해 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제2계약의 미술품은 원고가 2023. 7. 11.경 해외 송달을 통해 반환하였다)이 인정된다. 나아가 원고도 이 사건 각 계약이 모두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기 지급한 계약금의 일부 반환을 구하고 있고, 피고도 2024. 3. 13.자 준비서면을 통해 위 각 계약이 이미 해제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과 당사자들의 주장 내용 등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계약은 원고의 귀책사유로 피고가 이 사건 각 미술품을 위탁자들에게 반환한 무렵에 모두 해제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이 사건 각 계약 제5조는 ‘원고와 피고는 각 상대방에게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기 결재금액(계약금 등) 전액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한다.

가)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민법 제398조 제2항). 여기서 ‘부당히 과다한 경우’라고 함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경제적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위와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당시의 거래 관행과 경제상태 등을 참작한 결과 손해배상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하고, 단지 예정액 자체가 크다든가 계약 체결 시부터 계약 해제 시까지의 시간적 간격이 짧다든가 하는 사유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다209227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 을 제4, 6, 7, 9,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피고에게 귀속된 손해배상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부당히 과다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이 사건 각 계약 제5조에 따라 피고에게 귀속된 계약금은 이 사건 제1계약의 경우 매매대금의 20%, 이 사건 제2계약의 경우 매매대금의 10%(1, 2차 계약금)에 해당하는바, 이는 일반적인 물품 거래 관행에 비추어 통상적인 수준을 과도하게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② 피고는 2021. 10. 2. 이 사건 제1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수령한 즉시 5,000만 원을 위탁자 F에게 전액 송금하였고, 이후 위탁자로부터 매매대금 전부 또는 일부라도 반환받았다고 볼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제1계약에 따른 위 계약금 상당의 이익을 실질적으로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③ 피고는 위탁판매인으로서 이 사건 각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었을 경우 중개수수료(제1계약 매매대금 10%, 제2계약 매매대금 50%)를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였고, 이 사건 제2계약이 이행되지 않아 위탁자의 요구로 2023. 7. 12.경 약 1,580만 원 상당의 해외운송비를 부담하여 미술품을 반환하였다. 또한 원고의 계약 불이행으로 위탁판매가 무산되면서 피고는 위탁판매상으로서의 신뢰가 훼손되는 무형적 손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④ 원고도 피고가 미술품 위탁판매업을 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거래 관행상 원고의 계약 불이행으로 피고가 위와 같은 유·무형의 직·간접적인 손해를 입게 될 것이라는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⑤ 이 사건 각 계약은 잔금 미지급이라는 원고의 귀책사유로 해제되었고, 원고와 피고는 서로 대등한 관계에서 거래한 것으로서 원고를 특별히 경제적 약자라고 보기 어렵다.

⑥ 이 사건 각 계약 제6조는 계약당사자는 각 계약에서 정한 내용 이외에 다른 주장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호태